

과업지시서

『한국세무사회 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』

2021. 01.

한국세무사회

<목 차>

제1장 일반사항

1. 과업의 명칭	1
2. 과업의 목적	1
3. 과업의 개요	1
4. 과업의 내용	1
5. 수급인 준수사항	2

제2장 조사 및 평가

1. 정밀안전진단	4
-----------	---

제3장 보수 및 보강방법

1. 보수·보강공법 제시	4
2. 보수시기,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	4

제4장 보고서 작성

1. 보고서 작성	5
2. 보고서 제출	5

제5장 기타 사항

1. 과업 일반사항	6
2. 기타조건	6
3. 관련법규	7

제1장 일반사항

1. 과업의 명칭

- 한국세무사회 회관 정밀안전진단 용역

2. 과업의 목적

- 본 과업은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시설물 안전법” 이라 한다)과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」을 기준으로 하며, 건축물 구조안전 및 콘크리트, 철골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대상 건축물 전반에 관한 상태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.

3. 과업의 개요

가. 대지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(서초동) 한국세무사회

나. 과업대상

건물명	건축년도	구조	층수	연면적(m ²)	비고
한국세무사회 본관	1987	철근콘크리트조	1/6층	4,270.19	
한국세무사회 별관	1994	철근콘크리트조	0/2층	264	

다. 과업기간 : **착수일로부터 60일간**으로 한다.(공휴일등 휴무일 포함)

4. 과업의 내용

- 과업지시서는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,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관계규정, 기준, 지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가. 자료 수집 및 분석

- 1) 설계도서 검토 및 실측 후 설계도서 재작성(설계도서 전산화)
- 2) 건축물 보수 및 시공 당시 각종 자료 검토

나. 시설물 외관조사 및 현황조사

- 1) 주요부재 규격 실측(재료증명서, 품질시험기록, 재하시험자료, 계측자료)
- 2) 주요부재의 균열 유형(폭, 깊이 측정) 및 진행상태 조사
- 3) 콘크리트 품질평가(시공 상태)
- 4) 외벽창호 및 코킹 결함조사
- 5) 각층 사용 실태 조사 및 기계, 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
- 6) 주요부재의 상부하중에 따른 변형, 변위조사
- 7) 기존 본회관 증축 부분과의 결함 부분 및 모퉁이 기둥 수직도 조사

다. 건축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안전성능 평가

- 1)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성능 평가
- 2) 평가에 따른 보강방안 제시(기본설계안, 공법제시 등)

- 3) 보수·보강 방안 제시(설계서, 내역서, 산출근거, 일위대가, 보수서류일체)

라. 비파괴 조사

- 1) 철근 배근 상태조사 및 부식상태 측정(철근탐사)
- 2)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(반발경도법, 초음파법 등)
- 3) 콘크리트 중성화상태 파악

마. 구조물의 응력해석 및 안전성 평가

- 1) 건축물 현황조사와 비파괴 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구조부위에 대한 구조응력 해석
- 2) 사용하중 초과 부위에 대한 구조응력 검토 및 평가
- 3)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구조 안전성 검토 및 평가

바. 내구성 및 유지관리 평가 및 보수·보강방안 제시

- 1) 조사결과에 따른 상태평가
- 2)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
- 3) 결함정도에 따른 적절한 보수·보강 방안 제시
- 4) 장, 단기 계획과 즉시 반영하여야 되는 분야를 구분하여 체계적인 내진보강 대책수립

사. 구조설계도서 작성

- 1) 설계도서 검토 및 실측 후 설계도서 재작성(세부 구조도 포함, 설계도서 전산화)
- 2) 보수·보강 공법 설계도 및 설계내역서, 시방서 작성
 - 보수·보강방법을 평면도, 입면도, 상세도, 단면도, 시공도 등 타공법과의 비교를 명확하게 하여 용역수행자의 의도가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.

5. 수급인 준수사항

가. 수급인의 책임

- 1)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,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기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- 2)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고일정은 아래와 같다.

가) 주간보고

- 업무일지(주보)
- 진단부재와 위치 등
- 주간예정공정표(금주 시행한 일과 다음 주 할 일)
- 참여기술자와 장비투입현황(누계 포함) 등

나) 월간보고 : 매월 마지막 주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보고

다) 수시보고 :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(특별사항 발생 시 보고)
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과업추진 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.

나. 보안 및 비밀유지

- 1)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보안책임이 있으며,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- 2)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[첨부]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3) 수급인은 작업을 위해 출입하는 용역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, 보안구역에서는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4)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
- 5)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, 촬영한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및 삭제 처리해야 한다.
- 6)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.
- 7) 보안관련 준수사항은 과업수행원 모두가 알게 하여야 한다.

다. 관계기관 협의 및 인.허가

- 1) 과업수행을 위해서는 회관 내부 시설물에 출입이 필요하며, 이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관련부서 승인을 얻어 과업을 시행해야 한다.
- 2) 용역 수행 중 제반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수급인이 직접 인 허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.

라. 안전관리

- 1) 본 과업 현장조사 작성 시에는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안전사고 및 과업수행으로 대상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은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.
- 3) 부분적인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원 할 수 있다.

마. 용역수행자의 교체

- 1) 과업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,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2)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,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,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.
- 3) **본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갖춘 구조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**

제2장 조사 및 평가

1. 정밀안전진단

가. 과업의 내용

- 1)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통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실시한다.
- 2) 중대한 문제점 발견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.

나. 과업수행 세부내용

- 1) 자료수집 및 분석
 - 가) 건축물 관련 도면 및 자료 검토
 - 나) 건축물의 보수 및 관련 자료

다) 기타 유지관리 자료 등

2) 각종 현황조사

- 가) 주요 구조부재에 발생한 균열의 길이 및 규모 조사
 - 나) 기타 주요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에 발생한 박락, 박리, 누수, 백태, 기동 하부 부식 등의 손상조사
 - 다) 주요부재의 변형 및 처짐정도 측정
 - 라) 구조도면 작성을 위한 부재실측 등 현황조사
- #### 3) 각종 시험조사
- 가)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 - Schmidt Hammer를 이용하여 주요 부재에 대한 비파괴 시험
 - 나) 주요부재의 조사 - 콘크리트의 중성화 깊이를 측정
 - 다) 철근배근상태 조사 - Ferrdsan에 의한 철근의 간격, 깊이, 배근간격 등 배근상태 조사
- #### 4) 구조해석 및 안전성 검토
- 가) 하중조건 및 시공상태에 따른 구조해석 실시
 - 나) 내력평가를 통한 건물의 안전성 판정

제3장 보수 및 보강방법

1. 구조 보수·보강공법 제시

- 가. 향후 대상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·보강공법 및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, **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경제적인 보수·보강방안에** 대한 기본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,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,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나. 보수·보강공법의 채택 시 필요한 경우 구조해석 및 실험을 실시하여 공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다.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기, 단기별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 - 1) 보강설계도면(보강위치, 보강자재 등)
 - 2) 건축물의 적합한 보강공법 제시
 - 3) 보수 보강 공사비 및 공기산정
 - 4) 보수 보강 공사시방서
 - 5) 보수 보강공사 설계내역서
 - 6) 기타 산출근거 등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서류 일체
- 라. 시설물의 보수·보강 공사 후, 필요 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.

2. 보수시기,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

- 가. 보수시기, 보수우선순위, 보수대책은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각 구조물 별로 년도별 보수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

나. 단기(부분)보수대책은 전면보수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(보수대상, 공법, 추정소요예산)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고서 작성

1. 보고서 작성

가. 작성기준

- 1)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, 『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』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.
- 2) 색인, 판독,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3) 과업에 사용한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4) 성과품은 과업의 개요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.

2. 보고서 제출

가. 성과품의 제출

- 1)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.
- 2)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, 최종성과품을 제작하여 용역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보고서는 내용을 구분 색인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나. 제출목록

구분	설계도서명	규격	수량	단위	비 고
1	종합보고서	A4	3	부	현황사진 및 과업수행 사진첩 포함
2	실측(구조)도면	A4	3	부	평면도
3	유지관리지침서	A4	3	부	
4	보수·보강도면 및 내역서 (시방서 등 포함)	A4	3	부	내진보강 공법 포함 (시공가능한 도서)
5	성과품 USB		3	SET	

제5장 기타 사항

1. 과업 일반사항

가. 수급인은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.

나. 착수계 제출

- 1) 착수계는 **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**에 제출한다.
- 2)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시 용역 수행에 관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가) 책임기술자 선임계,

나) 참여기술자(기술자면허수첩 사본, 기술자 경력증명서, 사용인감계)

다) 예정공정표 및 내역서

라) 과업수행 조직체계

마)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

바)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

사) 계약자 서약서

아)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

다. 업무회의는 착수보고회의, 중간보고회의, 최종보고회의 및 수시회의(감독관의 요구시)를 진행 하고, 회의시 지적 요구사항을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라.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,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마.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.

바.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되어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사.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아.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,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·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.

자. 본 용역 수행 중 주간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야간 및 휴일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,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차.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, 근거를 명시 하지 못한 경우 재수행을 명할 수 있다.

2. 기타조건

가.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,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,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,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.

나. 발주처는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,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.

다. 기타 사항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되,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발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라. 본 용역 수행 중 조사를 위한 철거 및 파손(마감재 및 구조체)에 대한 보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마.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기타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.

바. 본 용역의 직접경비에 대하여는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」규정에 의한다.

3. 적용법규

- 가.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
- 나.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(국토교통부)
- 다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(한국시설안전공단)
- 라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(비용 산정) 기준